

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과)

제정 2023·11·1 조례 제202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”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2. “4에이치활동”이란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.
3. “4에이치활동 단체”란 이천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천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
2. 사업 세부 추진계획
3.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·홍보·표창
4.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5.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·연수 및 육성방안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·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
2.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
3.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
4.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)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계획의 제출)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산보고 등)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
2.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

제9조(업무검사 등)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